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75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1. 1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9. 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895,180원, 지역자원시설세 415,840원, 지방교육세 179,0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5. 9. 10. 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1,488,270원, 지방교육세 297,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5. 1. 7. B로부터 [redacted] [redacted] 군 C 대 5,716㎡, D 대 24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교육연구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 E와 공유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5. 7. 9.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895,180원, 지역자원시설세 415,840원, 지방교육세 179,030원을, 2015. 9. 10.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1,488,270원, 지방교육세 297,65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3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수시로 예배, 세미나, 국제회의 등의 종교행사를 개최하였고, 건물 내부에 기도실도 마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조사를 한 2015. 10. 26.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예배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날이 아니라서 그 출장조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은 원고 대표의 접견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대표는 원고의 조직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그의 접견활동은 원고의 사업수행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끝.